의안번호	제 859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박 형 용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

(박형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59

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발 의 자 : 박형용, 이숙애, 이상욱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
오영탁

1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나.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다.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라. 지원신청 및 지원 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104호
다. 협 의 : 여성가족정책관
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상속채무”란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청소년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법률지원”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
2.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(「민법」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.

제5조(지원범위)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속의 포기: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
2. 한정승인: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

제6조(지원방법 등)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,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7조(비용지원) 도지사는 인지대,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8조(지원신청)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 등) 도지사는 도 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·군, 충청북도교육청, 법률구조 전문기관, 청소년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,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

1. 신청인

○ 성 명 (성별: 남, 여)

○ 생년월일

○ 주 소

※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

○ 성 명 (관계)

○ 생년월일

○ 주 소

2. 법률지원 요청내용

3.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

동의( ) 부동의( )

붙임 관련 증빙서류 1부.

20 . . .

신청인 서명

충청북도지사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

1. 지원대상자
   ○ 성 명 (성별: 남, 여)
   ○ 생년월일
   ○ 주 소
   ○ 법률지원 요청내용(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)

2. 지원내용, 진행사항 및 결과

3. 기타 참고사항

관계법령 발췌

□ 청소년 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□ 민법

제4조(성년)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. [전문개정 2011. 3. 7.]

제5조(미성년자의 능력)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

제931조(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)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,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1. 5. 19.]

제932조(미성년후견인의 선임)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, 친족, 이해관계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.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가정법원은 제924조,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, 일시정지,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

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. <개정 2014. 10. 15.>
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3. 7.]

제997조(상속개시의 원인)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. <개정 1990. 1. 13.> [제목개정 1990. 1. 13.]

제1005조(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)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0. 1. 13.>

제1009조(법정상속분)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. <개정 1977. 12. 31., 1990. 1. 13.>
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. <개정 1990. 1. 13.>
③ 삭제 <1990. 1. 13.>

제1019조(승인, 포기의 기간)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1990. 1. 13.>
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02. 1. 14.>
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2. 1. 14.>

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○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발굴 및 홍보

○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관련 법률상담, 각종 청구 및 신청 등 지원

○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에 소요되는 송달료, 인지대 등 비용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 및 상속포기·한정승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(송달료, 인지대 등) 지원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3조의2(도지사의 책무)

○ 안 제7조(비용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○ 추계의 전제

- 사업 수행 인력 인건비 미반영
- 지원비용 : 1인당 500,000원* 한도 내에서 지원

* 송달료 30,600원, 인지대 5,000원, 신문공고비 165,000원, 수임료 300,000원 적용

- 지원인원 :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'20. 7월 ~ '21. 5월 지원 인원(24명)과 도내 시군 수를 고려하여 연간 10명 적용

(단위:천원)

구 분	합 계	산출기초	비고
홍보비	18,200천원	· 리플릿 400원×4,000개 = 1,600 · 포스터 4천원× 400개 = 1,600 · 홍보물품 5천원×3,000개 = 15,000	
지원비용	5,000천원	500천원×10명 = 5,000	

○ 추계결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16,000천원

○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					0
국비							0
도비							0
세 출		23,200	23,200	23,200	23,200	23,200	116,000
홍보비	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지원비용		5,000	5,000	5,000	5,000	5,000	25,000
재원 조달		23,200	23,200	23,200	23,200	23,200	116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23,200	23,200	23,200	23,200	23,200	116,000
	세외수입						